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5. 12. .
행정안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11월 7일, 조승환의원 등 11인

나. 회부일자: 2024년 11월 8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2025.02.18.)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2025.11.17.)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
반영폐기)

제16차 행정안전위원회(2025.11.27.)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조승환의원)

디지털 전환 시대를 맞이하여 국민의 디지털 환경에 대한 적응력과

이해도가 높아짐에 따라 행정서비스 제공 시 필요한 정보의 확인 방식이나 서비스 제공 방식 등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음.

이에 따라 기존의 신분증도 국민이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신분증의 형태로도 발급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으나, 관련 법 체계가 미흡하여 보완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본 법률안은 개별법에 따라 추진 중인 모바일신분증을 체계적으로 발급·관리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모바일신분증의 안전성·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디지털 전환 시대에 국민이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전자정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안 제10조의2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유상조 수석전문위원)

현재 발급되는 모바일신분증은 각각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도로교통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국가보훈 기본법」 및 국가보훈관계 법령, 「주민등록법」, 「출입국관리법」에 그 법적 근거를 두고 있고, 모바일 재외국민신원확인증 및 모바일 국가기술자격증은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되고 있는 한편, 모바일 장애인등록증(2026년 1월 도입예정)은 법적 근거를 마련 중인 것으로 파악됨.

이처럼 개별 모바일신분증의 발급 근거는 해당 신분증과 관련된 개별 법령을 통해 마련되고 있는바, 개정안은 “모바일신분증”이라는 용

어를 도입하여 모바일신분증 발급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행정기관등¹⁾의 장의 모바일신분증 발급·이용·폐기에 관한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 조치의무, 행정안전부장관의 모바일신분증 발급·관리와 관련한 공통 운영기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바일신분증 제도운영의 체계화 및 종합화를 도모하려는 취지로 보임.

다만,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다음 사항에 대해 논의가 필요해 보임.

첫째, 모바일신분증의 위·변조 및 부정 사용 등 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대한 제재가 가능할 수 있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음.

최근에 모바일신분증 및 모바일확인서비스의 부정 사용이 증가하는 가운데 18세 미만 미성년자에 의한 행위가 차지하는 비율도 상당한 수준에 이르는 등 모바일신분증 부정 사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바, 향후 모바일신분증의 위·변조 및 부정 사용을 예방·근절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요구됨.

따라서 모바일신분증을 위·변조 제작하거나 모바일신분증을 부정하

1) 「전자정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자정부”란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하 “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의 업무를 전자화하여 행정기관등의 상호 간의 행정업무 및 국민에 대한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정부를 말한다.
2. “행정기관”이란 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법인·단체 또는 기관
 -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 라.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

4.~15. (생략)

게 사용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의 종류 및 최고한도를 규정하여 법적 이행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주민등록법」, 「도로교통법」, 「출입국관리법」 등은 모바일 주민등록증, 모바일 운전면허증,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등의 부정사용 행위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으나, 그 형벌의 범위와 수준에서는 개별법률마다 차이가 존재함.

[모바일신분증 부정사용, 위·변조 및 그 행사 처벌 규정]

구분	부정사용	위·변조	위변조행사	형량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법 제37조	X	X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운전면허증	도로교통법 제150조	X	X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외국인등록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출입국관리법 제94조	X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국가보훈증	X	X	X	X

둘째, 모바일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는 행정기관등에는 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이하 “헌법기관”이라 함)이 포함²⁾되므로 안 제1항 및 제3항의 조문에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음.

안 제10조의2제1항에서는 발급할 수 있는 모바일신분증을 “대통령

2) 「전자정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자정부”란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하 “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의 업무를 전자화하여 행정기관등의 상호 간의 행정업무 및 국민에 대한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정부를 말한다.
2. “행정기관”이란 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령”에 위임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모바일 신분증 공통 운영기반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법 체계에 맞추어 헌법기관에 대해서는 각 기관의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겠음.

4. 대체토론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윤건영)

동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 폐기